

# 2015. 교육훈련기관 교육경비 지급기준

□ 근거 : 2015. 교육여비 지급기준 변경계획(부구청장 방침 164호, 15.9.14)

가. 교육비 : 교육훈련기관 청구금액, 교육수료 여부 확인하여 사후 정산

나. 교육여비

구 分		운 임	일 비 (1일당 20,000)	숙 박 비	식 비
근무지 내 (서울)	인재개발원 (데이터센터)	미지급	○ 입·퇴교일 전액 ○ 기타일 - 합숙 미지급 - 비합숙 5할	미지급	미지급
	합 숙		○ 입·퇴교일 전액 ○ 기타일 미지급	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	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
	비합숙		○ 입·퇴교일 전액 ○ 기타일 5할	미지급	미지급
근무지 외	합 숙	실비 (여비조례 별표1)	○ 입·퇴교일 전액 ○ 기타일 미지급	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	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
	비합숙		○ 입·퇴교일 전액 ○ 기타일 5할	정액 (제2호 : 3만원)	미지급

- 중앙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상기 기준 적용, 연찬회·회의 등은 지급제외
- 근무지 외 교육훈련시에도 자택에서 출퇴근 가능한 경우 숙박비 미지급
- 위 기준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'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'에 따름

□ 동작구 여비조례 별표1(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(버스)운임	숙박비 (1박당)
제1호	1등급	1등급	정액	정액	46,000 (구청장은 실비)
제2호	2등급	2등급	정액	정액	30,000

-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-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-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-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-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 별표 1을 준용한다.